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국가보훈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Post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1급 감염병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보훈병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서면검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유공자 등의 상이정도를 판정하는 기준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및 동 법 시행규칙 별표 4(2020. 2. 1. 시행)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의 장애등급기준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서면심사에 의한 검진’ 신설(안 제4조의2)

Post 코로나 시대 대비 및 고엽제 검진 전 사망한 경우 등에 대하여 서면검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나. 상이등급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환자 장애등급기준 개정(별표 1, 별표 2)

1) 국가유공자 등의 상이정도를 판정하는 상이등급기준이 개정되었음
(2020. 2. 1. 시행)

- 2) 상이등급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3)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도 장애정도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서면심사에 의한 검진) 보훈병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심사(書面審査)로 할 수 있다.

1.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검진 대상자로서 본인이 책임질 사유 없이 해당 검진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2. 법제7조제5항에 따른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검진 결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보훈병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1 제1호 라. 중추신경장애, 뇌경색증, 뇌출혈, 다발성경화증의 중등도 장애란 2) “두 다리와 두 팔 중 어느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을 “한 팔 또는 한 다리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하고, 경도 장애란 1) 중 “기능저하를 보이는 사람”을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으로 한다.

동호 마. 근위축성신경측색경화증, 근질환의 고도 장애란 “근력 약화가 심하여 보행할 수 없고 고도의 근쇠약이 있는 사람”을 “심한 근력 약화로 인하여 보행기능을 상실한 사람”으로 하고, 중등도 장애란 “근력 약화로 보조기가 필요한 정도의 근쇠약이 있는 사람”을 “근력 약화로 인하여 개호인이나 보조기(지팡이는 제외한다)에 의존하여야 보행이 가능한 사람”으로 하며, 경도 장애란 “근력 약화는 있으나 보조기 없이도 보행이 가능한 사람”을 “근력약화로 인하여 보행기능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한다.

동호 바. 다발성신경마비 경도 장애란 중 “경미한”을 “경도의”로 한다.

동호 카. 고혈압의 고도 장애란 4) “고혈압으로 인하여 대동맥 박리가 있거나 대동맥박리로 인하여 시술 및 수술을 한 사람”을 삭제하며, 중등도 장애란 1) 중 “2회 이상의 혈액검사에서 혈중 크로아티닌의 농도가”를 “2회의 혈액검사에서 혈중 크로아티닌의 농도가 모두”로 하고,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고혈압으로 인하여 대동맥 박리가 있거나 대동맥박리로 인하여 시술 및 수술을 한 사람

동호 카. 고혈압의 경도 장애란 1) 중 “2회 이상 소변검사에서 단백뇨가”를 “2회의 소변검사에서 모두”로 하고, 4) 중 “2회 이상의 혈액검사에서 혈중 크로아티닌의 농도가”를 “2회의 혈액검사에서 혈중 크로아티닌의 농도가 모두”로 한다.

동호 타. 동맥경화증의 중등도 장애란 2) 중 “우회로 수술이나 대동맥류 수술을 한 사람”을 “대동맥 박리가 있거나 대동맥박리로 인하여 시술 및 수술을 한 사람”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4조의2 (서면심사에 의한 검진)</u> <u>보훈병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u> <u>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심사</u> <u>(書面審査)로 할 수 있다.</u> <u>1.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검진</u> <u>대상자로서 본인이 책임질 사유</u> <u>없이 해당 검진을 받지 못하고</u> <u>사망한 경우</u> <u>2.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결정에</u> <u>대한 행정심판의 재결 또는</u> <u>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검진</u> <u>결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u> <u>경우</u> <u>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u> <u>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u> <u>제1급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u> <u>하기 위해 보훈병원장이 필요</u> <u>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

[별표 2]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의 장애등급 구분 및 수당 지급액 구분표(제9조제1항 관련)

1.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 구분표

장애 구분 질병명	고도 장애	중등도 장애	경도 장애
가. 척추이분증, 하지마비척추병변	1) 하반신이 마비되어 보행기능을 상실한 사람	1) 개호인이나 보조기(지팡이는 제외한다)에 의존하여야 보행이 가능한 사람	1) 한 손 또는 한 발의 기능에 경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
	2)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사람	2) 대소변 또는 대장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약이나 주기적인 도뇨관 삽입이 필요한 사람	2) 대소변을 가리는데 경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
	3) 필기도구를 잡을 수 없고 스스로 식사와 자기보호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손발에 기능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이 있는 사람	3) 손발에 기능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이 있으나 필기도구를 잡을 수 있고 스스로 식사와 자기보호가 가능한 사람	3) 척추 손상(외상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4) 뇌수종으로 인하여 지능지수(IQ)가 69 이하인 사람	4) 뇌수종으로 인하여 지능지수(IQ)가 70 이상 89 이하인 사람	
	5) 척추 손상(외상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신경마비로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된 사람	5) 한 팔 또는 한 다리에 신경마비로 인하여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 척추 손상(외상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고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7) 좌반신 또는 우반신 불수로서 보행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나. 말초신경병	1) 양팔 전체와 양다리 전체에 뚜렷한 근위축과 근약증이 있는 사람	1) 양팔 전체 또는 양다리 전체에 뚜렷한 근위축과 근약증이 있는 사람	1) 양쪽 손의 손가락 전체 또는 양쪽 발의 발가락 전체에 뚜렷한 감각신경 이상과 근약증이 있는 사람
	2)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한 팔과 한 다리 또는 양 팔이나 양 다리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2) 양쪽 손과 양쪽 발에 뚜렷한 근위축과 근약증이 있는 사람	2) 양쪽 손 또는 양쪽 발에 뚜렷한 근위축과 근약증이 있는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5분의 2 이상 잃어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어 취업 상 정도의 제한을 받는 사람
		4) 한 팔의 팔꿈치관절 이하 또는 한 다리의 무릎관절 이하에 고도의 근위축이 있거나 신경이 마비된 사람	4) 신경 손상으로 한 손의 손바닥이 마비된 사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 등록관리과	
연 락 처	(044) 202 - 5130 (044) 202 - 5438